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공무원임용령에 부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령」 규정을 반영하여 승격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을 구체화하고, 국외유학 휴직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 등 경력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기준을 설정(안 제2조의3)

나.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1점)을 명문화(안 제5조의2)

다. 승격명부 작성 및 승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 재외동포청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라. 승격시기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휴직하는”을 “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되는”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제2조제1항제5호의”를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승격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3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제5호에 따른다.

제5조의2제3항 중 “외교부장관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1점을 추가로 부여하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제6조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이”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로 한다.

제9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외교부”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실장급 이상 직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를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재외동포청 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유학휴직 반영 기간의 적용례) 제2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직위 근무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경우 동일한 전문직위에서의 총 근무기간에 이 규칙 시행 전의 해당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승격의 제한) ① (생략)	제2조(승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격제한기간은 전 처분의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격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u>휴직하는</u>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격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② ----- ----- ----- ----- ----- ----- <u>휴직하거나 직위해제되는</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생략)	제2조의3(승격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2조제1항제5호의</u>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u>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승격의 제한</u> ----- -----.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전에 재직하던 직무등급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③ ----- ----- ----- ----- ----- -----.

1. · 2.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기간

가. (생략)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단서 신설>

다. (생략)

4.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임용 또는 재임용 당시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 6. (생략)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_____

가. (현행과 같음)

나. -----

-----.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중방역수의

⑤・⑥ (생략)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② (생략) ③ <u>외교부장관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u> <u><신설></u>	<u>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산정방식은 제5호에 따른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u>----- ----- ----- ----- --. ④ <u>「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1점을 추가로 부여하되,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경력평정가능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u>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u>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선순위자</u>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u>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2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전일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준하는 경우로서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외무공무

-----.

제7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명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

-----.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 따라 외교부장관이 구성하는 외교부 -----

원임용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실장급 이상 직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7명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
다.

② (생략)

<신설>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
교부장관은 직무등급 5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68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로 상위직
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 전에 미리 「공무원보수규
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승격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
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 제3조제1항제1호의
실장급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구성하는 재외동포청 승격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여서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승격기준 및 방법) ① 외
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③ <u>외교부장관</u>은 직무등급 2등급 및 4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에 대하여는 명부상의 순위, 외국어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되, 그 임용전에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u>외교부장관</u>은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승격후보자의 총평정점이 52.5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바로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u>외교부장관</u>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③ <u>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u> ----- ----- ----- ----- ----- ----- ----- ----- ---. ④ <u>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u> ----- ----- ----- ----- -----. 제14조(승격시기) ----- ----- -- <u>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u>----- ----- -----.
---	---